

- 수 신: 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2. 주식회사 광영디앤엠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6, 403호(역삼동, 엘엔케이빌딩)
3. 금장건설 주식회사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84
4. 주식회사 광영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6, 4층(역삼동, 엘엔케이빌딩)

발 신: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수학, 오대호, 김수금, 김현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West 9층

제 목: 청약철회 및 대금반환 요청의 건

1. 저희 법무법인은 김정솔님(이하 ‘발신의뢰인’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귀하에게 본 서신을 보냅니다.
2. 발신의뢰인은 2023. 4. 15. 강남역 5번출구 앞에서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광영’의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부터 ‘더 케이 라이브 오피스 분양홍보관’(이하‘이 사건 오피스’, ‘이 사건 분양홍보관’이라 합니다)<sup>1</sup>에 방문해 줄 것을 권유 받았습시다(이하 ‘이 사건 권유’ 라 합니다).

---

<sup>1</sup>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1층에 위치한 분양홍보관입니다.

3. 발신의뢰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광영의 직원’으로 보이는 이여은 실장과 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에 관한 추가적인 안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의뢰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주식회사 광영디앤엠’, ‘금장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 804호에 관해 347,182,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오피스 공급계약’이라 합니다).
4. 발신의뢰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이 사건 오피스 공급 계약 대금 중 현금으로 3,000,000원, 카드로 2,8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5. 발신의뢰인은 2023. 4. 17.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이여은 실장에게 청약철회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했으나, 이여은 실장은 분양홍보관에 다시 방문해서 설명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발신의뢰인은 2023. 4. 19. 분양홍보관에 방문해서 이여은 실장과 본부장에게 다시 한번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여은 실장과 본부장은 청약철회는 불가하고, 추후 잔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할 것이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6.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신의뢰인은 이 사건 오피스 공급계약을 청약철회하며, 이 사건 오피스 공급계약의 대금 중 지급된 5,800,000원의 반환을 최종적으로 요청합니다.

## 다 음

- ① 이 사건 권유는 이 사건 오피스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분양홍보관 외의 장소에서 발신의뢰인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상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sup>2</sup> 참고).

- ② 발신의뢰인은 이 사건 오피스 공급계약을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그 계약서를 받은 날인 2023. 4. 15.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sup>3</sup> 참고).
- ③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발신의뢰인에게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5,8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 1문<sup>4</sup> 참고).

<sup>2</sup>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이하 “청약”이라 한다)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sup>3</sup>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sup>4</sup>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5,800,000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발신의퇴인은 이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신의퇴인은 위 절차 중 발생하는 변호사보수 등 일체의 소송비용을 함께 청구할 것입니다.
8. 본 내용증명을 발신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발신의퇴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귀하가 이 문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시거나 기타 발신의퇴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연루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선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27.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 수 학

담당변호사 오 대 호

담당변호사 김 수 금

담당변호사 김 현 섭